

붙임 1. 일반 특별공급 대상세대

구분	84 TYPE	73 TYPE	59 TYPE	계
	84.9889	73.1098	59.7224	
일반(85㎡이하 민영주택)				
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철거민, 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이주민, 대한민국체육유공자, 우수선수 등	8	8	24	40

■ 일반(85㎡이하 민영주택) 특별공급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의 10% 이내)

• 신청자격

- 대상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정신지체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
-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일반/다자녀/노부모/신혼부부 등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항 제12호, 제13호,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• 당첨자 선정방법

- 대상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.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(미신청·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)